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세출)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3개소(100평 이상)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3. 취득동의 요청

- 금번에 의결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부지로써,
-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3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8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 취득방법

-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 합니다.

5. 참고사항

- 공영 노외주차장 취득대상 재산내역

6. 검토의견(전문의원 : 서 동 근)

-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 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세출)에 의거 공영 노외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 적정부지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한 매입은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고 또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선정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면밀한 심사를 통한 의결이 사료됩니다.

공영 노외 주차장 취득대상 재산내역

명 칭	소재지	면 적	소요예산	취득시기	비 고
공 영 노외 주차장	서구 관내	100평 이상	800,000천원	2004년중	

※ 매입 당시 여건(매입금액,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개소수(1 ~ 3개소)를 결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회계명: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금 액	비 고
취 득	1. 매입	토 지	1 ~ 3개소	100평 이상	800,000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
		건 물				
		기 타				
	2. 교환으로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3. 기타 취득	토 지				
		건 물				
		기 타				
	계	토 지	1 ~ 3개소	100평 이상	800,000	
		건 물				
		기 타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주 소	성 명	
1		서구 관내	100평 이상 1 ~ 3개소	800,000	2004년중	공영 노외 주차장부지	사유지 또는 공공용지	미정	